

1.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6.00.00~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 호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1.12.1000호, 제4411.12.9000호, 제4411.92.1000호, 제4411.92.9010호, 제4411.92.9090호, 제4411.93.1000호, 제4411.93.9010호, 제4411.93.9090호, 제4411.94.1000호 또는 제4411.94.9000호에 해당하는 태국산 섬유판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
2.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단, 기계적 가공 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음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태국	1. 피피엠(Panel Plus MDF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0.24%
	2. 어드밴스(Advance Fiber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5.29%
	3. 그 밖의 공급자	22.44%

비고: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